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2022. 1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1. 추진근거 및 보고내용

▶ 주요 변경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3항
 -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보고

▶ 보고 내용

- 현재 존치중인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개소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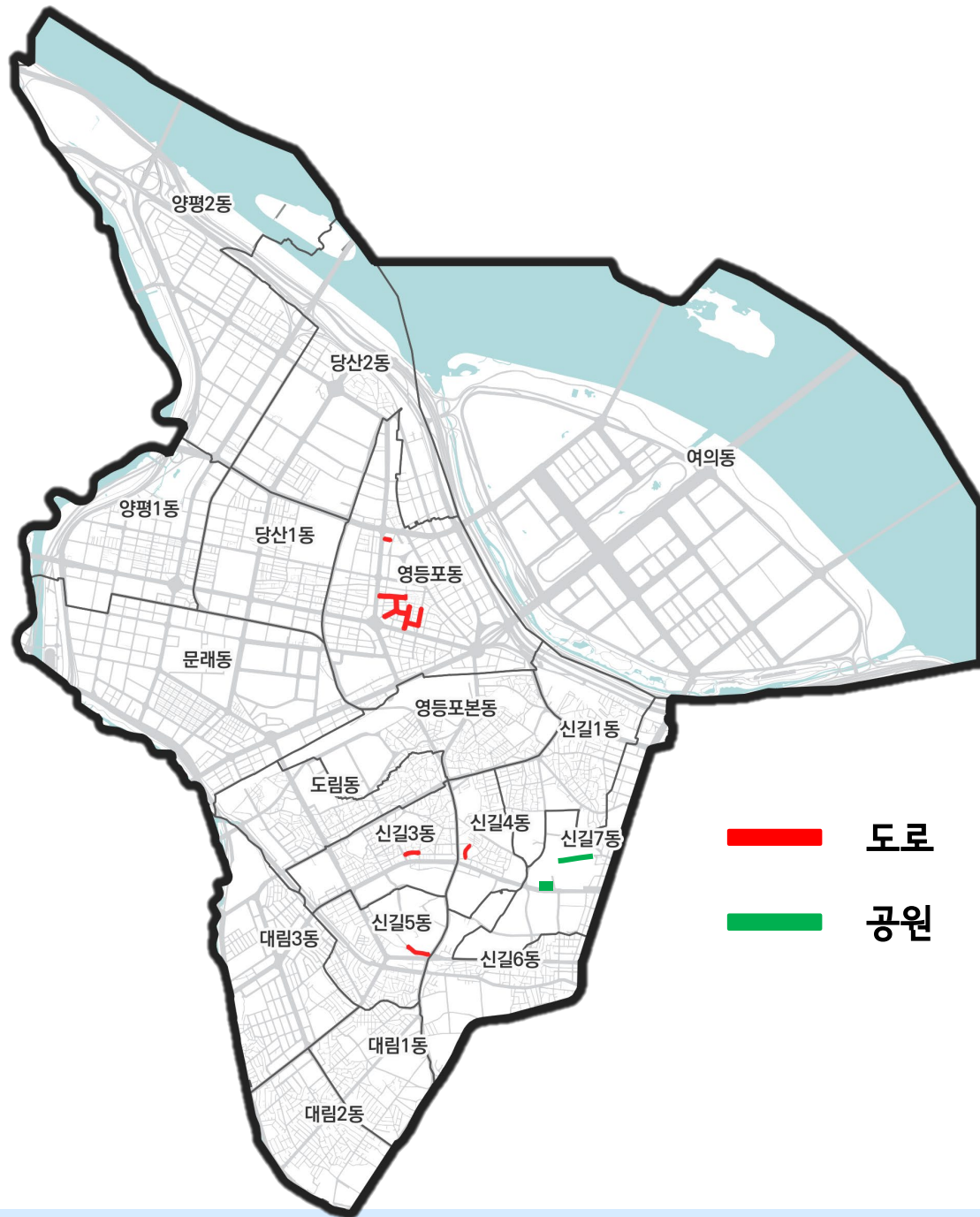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2. 추진경위

2000.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 도입(「도시계획법」)
2011.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제도 도입(「국토계획법」)
2018.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영등포구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영등포구공고 제1678호)
2019. 9. ~ 20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관리방안 수립 용역 시행
202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23개소, 학교 2개소, 공원 1개소, 수도공급설비 1개소 (부분실효포함)
202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영등포구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영등포구공고 제2036호)
2022.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3개소, 공원 1개소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설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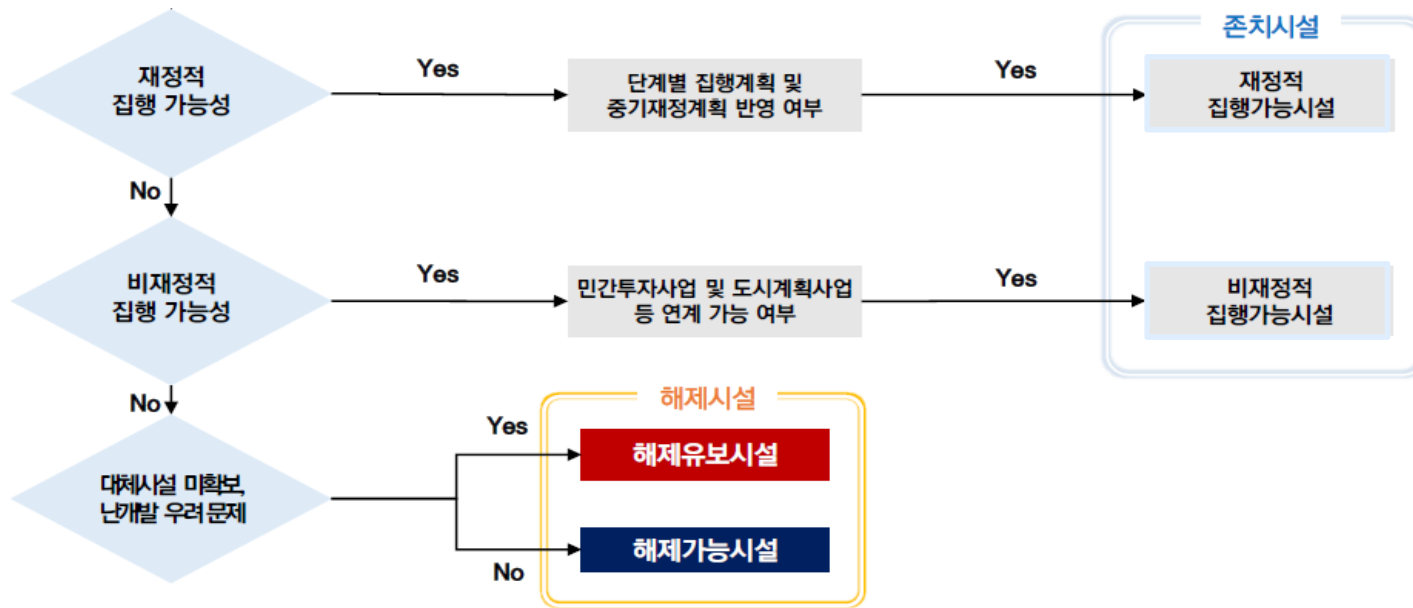
구분	총계	도로	공원
개소	11	10	1
면적(m ²)	18,615	13,981	4,634

4.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2017. 9.)



- ☞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 재정투입을 통하여 집행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 ☞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 재정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민간투자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

5. 단계별 집행계획(안)

▶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 종류	단계별 집행계획		비고
	1단계 (3년 이내)	2단계 (3년 이후)	
합 계	-	11	
도 로	-	10	
공 원	-	1	

※ 11개소 중 3개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8개소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설임에 따라 향후 비재정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및 사업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또는 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현황

시설 종류	건수	규모(m ²)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11	18,615	133,400	130,921	2,479	
도 로	10	13,981	109,172	107,123	2,049	
공 원	1	4,634	24,228	23,798	430	

5. 단계별 집행계획(안)

▶ 세부현황

연번	분류	종류 세분	위치	규모			결정고시일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m ²)		계	보상비	사업비		
1	도로	소로2류	신길동 263-37 ~ 321-1	8	103	824	2006.02.16	6,264	6,166	98	2 (비재정)	신길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검토 중
2	도로	소로3류	신길동4902-16 ~ 4902-5	6	97	582	2006.02.16	2,805	2,773	32	2 (비재정)	신길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로	소로1류	영등포동7가 76 ~ 75-3	10	43	430	2005.12.22	3,013	2,991	22	2 (비재정)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4	도로	소로2류	영등포동5가 40-4~105-1	15	178	2670	2005.12.22	26,135	25,726	409	2 (비재정)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5	도로	중로2류	영등포동5가 41-21~20-62	15	88	1320	2005.12.22	15,237	15,032	205	2 (비재정)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6	도로	중로2류	영등포동5가 111 ~ 41-2	15	153	2295	2005.12.22	25,411	25,054	357	2 (비재정)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7	도로	소로1류	영등포동5가 33-134~18-8	15	156	2340	2005.12.22	22,683	22,320	363	2 (비재정)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8	도로	중로3류	영등포동5가 33-29 ~ 6-1	12	121	1452	2005.12.22	1,103	900	203	2 (비재정)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9	도로	소로1류	영등포동5가 13-1 ~ 9	12	69	828	2005.12.22	5,360	5,206	154	2 (비재정)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10	도로	소로2류	신길동 424-3 ~ 340-1	8	155	1240	2007.11.29	1,161	955	206	2 (비재정)	신길재정비촉진지구
11	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1200-1 일대	-	-	4634	1940.03.12	24,228	23,798	430	2 (비재정)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6. 단계별 집행계획(안)_분류별 사례(신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도로: 신길동 263-37 ~ 321-1

시설 세분	규모		최초 결정일	단계별 집행계획
	폭원(m)	연장(m)		
소로2류	8	103	서고56 (2006.02.16.)	2단계



주요 내용

- 전체구간 100%가 신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됨. 전체구간 29%가 국공유지이며, 71%는 사유지인 대지
- 현행도로는 남측의 건축물로 인해 폭원확보 안됨
- 신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으로 해제 검토에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선에 맞아있는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신길15해제구역_후보지 선정) 사업 진행시 도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단계별 집행계획(안)_분류별 사례

▶ 도로: 영등포동5가 13-1 ~ 9

시설 세분	규모		최초 결정일	단계별 집행계획
	폭원(m)	연장(m)		
중로3류	12	83	서고 411 (2005.12.22.)	2단계

주요 내용

- 전체구간 100%가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의 1-14 구역에 포함되며, 전체 구간 76%가 국공유지이고 24%가 사유지인 대지임
- 현황도로는 국공유지로 도로기능상 문제없으나 폭원 미확보 및 가판대 등으로 차량통행 불가
- 영등포1-14구역 촉진사업 추진 시 확보 (1-14구역: 추진위 미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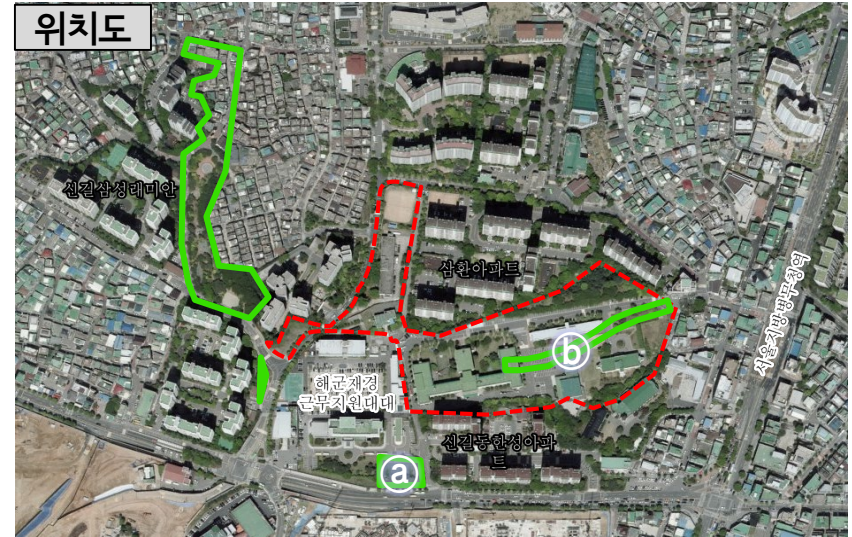
6. 단계별 집행계획(안)_분류별 사례

▶ 공원: 신길동 1200-1 일대

시설 세분	미집행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단계별 집행계획
근린공원	4,634	총독부고시 208 (1940.03.12.)	2단계

주요 내용

- 일부는 공원조성 완료 됐으나 미집행 부분(신길동 1200-1, 1287)은 병무청 및 해군부대에서 점유중
- 병무청 점유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계획(안) 수립 진행중
- 구재정여건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비재정사업 추진 검토





감사합니다

구분	발췌문	
헌법불합치 (1999.10.21.)	<p>.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1999.10.21.)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위배</p>	
매수청구제도 (2000.1.28.)	<p>「도시계획법」 제4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법률 제6243호, 2000.1.28.]</p> <p>①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8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7.1.]</p> <p>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국토계획법」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p> <p>①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p> <p>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p>	<p>「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p> <p>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p>
자동실효제 (2000.1.28.)	<p>「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p> <p>①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p> <p>②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p> <p>※ 2000. 7. 1. 이전에 결정 고시 된 시설의 기산일 : 2020. 7. 1. [부칙 제16조(제6655호, 2002.2.4.)]</p>	

구분	발 체 문	
<p>의회보고제도 (2011.4.14.)</p>	<p>「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p> <p>③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p> <p>④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p> <p>⑤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p> <p>「국토계획법」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p>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p> <p>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p> <p>②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2. 4.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4. 10., 2014. 11. 11.〉</p> <p>④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신설 2012.4.10.〉</p> <p>⑤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4.10.〉</p>